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7. 11. 24.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7.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환경복지위원회(97. 12. 15.) 상정
-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환경복지위원회(97. 12. 15.)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가. 제안이유

-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및진료수가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수가에 대하여 경기도보건 65550-5385(97. 10. 6.)호에 의하여 징수기준을 정하고
- 진료비 및 수술료의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4조)
-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보험 진료 수가의 징수 기준을 정함(안 제6조)
- 진료비 면제 확대(안 제9조 제1항)
 -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치석제거술 및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의치, 보철진료비(단, 의치·보철에 소요되는 가공비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면제
 -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등 진료비 면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민간 단체인 치과의사협회와 사전 대화는 되었는지? ○ 치면 열구전색을 할 경우 일반병원에서는 얼마를 받는가? ○ 1인당 불소도포 치료 소요시간은 얼마인가? ○ 65세 이상 노인에게 치과의료 치료시 160여 개 부천시 치과의료 업소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는데.	○ 충분한 협의를 가졌음. ○ 일반병원에서는 3만원을 받고 보건소에서는 5천원을 받을 계획임. ○ 약 30분 정도 소요됨. ○ (치과의료협회장 김교식 답변)타격은 있겠지만 우리 치과 의료인들이 국민보건 차원에서라도 노인들에게 무료로 치료해 줄 입장임을 감안할 때 보건소에서 치료해주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영세민들을 위해 보건 혜택을 주는 조례로서 전 위원 반대의견 없이 찬성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부천시 관내 10세 이하 어린이에게 불소도포 치료를 해주는 것은 인력부족 등 장비부족 현상이 우려시 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3호
의결년월일	97. 12. 27. (제57회)

제출년월일 : 97. 11. 24.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및진료수가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수가에 대하여 경기도보건 65550-5385(97. 10. 6.)호에 의하여 징수기준을 정하고
-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4조)
-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및진료수가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보험진료수가의 징수기준을 정함(안 제6조)
 - 치면열구전색(1치아당) : 5,000원
 - 불소도포(전체치아) : 5,000원
- 진료비 면제확대(안 제9조제1항)
 -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석제거술 및 의료보호대상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의치, 보철진료비(단, 의치·보철에 소요되는 기공비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등

□ 관계법령발췌서

-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
- 경기 보건 65550-5385(97. 10. 6.)호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 단서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을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로 하고, 제5조의1을 제5조의2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수질검사) 음용수 및 공중목욕장 등의 수질검사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한다.

제6조를 제6조의2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비보험진료수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보험진료수가는 별표4의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제6조의2(기타수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또는 별표4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간포함),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로 할 때
2. 법정전염병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6.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단, 의료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

7.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석제거술 및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치, 보철진료비

단, 의치, 보철에 소요되는 기공비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8.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비보험진료수가

(단위 : 원)

구 분	종 목	기 준	금 액	비 고
치과	치면열구전색	1치아당	5,000	
	불 소 도 포	전체치아	5,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제1조(목적) 이 조는 <u>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u> 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지역보건법 제14조</u>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u>보건사회부장관</u> 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정수한다.	제3조(진료수가) <u>보건복지부장관</u>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시행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u>보건사회부</u> 행정지도가 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약가) <u>보건복지부</u>
제5조의1(공중목욕장 수질검사) 공중목욕장의 수질 검사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의2(수질검사) 음용수 및 공중목욕장 등의 수질검사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제5조의7(생략)	제5조의3~제5조의8 (현행 제5조의~제5조의7과 같음)
<신 설>	제6조(비보험진료수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보험진료수가는 별표4의 기준액을 적용 정수한다.
제6조(기타수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정수할 수 있다.	제6조의2(기타수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또는 별표4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포함),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현행	개정안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및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의료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비용부담에 한한다. ②(생략)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로 할 때 2. 법정전염병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6.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단, 의료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 7.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석제거술 및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치, 보철진료비. 단, 소요되는 기공비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8.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단, 응급투약에 한한다.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현행과 같음)